

'14년 퇴직연금 중도인출(1차) 시행 관련 Q&A

Q1.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이 뭔가요?

- A. 퇴직연금제도는 근무기간 중 일정금액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는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산정된 금액의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B. 우리회사는 2011년 4월까지 퇴직금제도로 운용한 후에 2011.4.29일부터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을 먼저 도입하였으며, 2012.12월에 확정기여형(DC)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 ※ DB(Defined Benefit), DC(Defined Contribution)

Q2.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형)의 큰 차이점은 뭔가요?

- A.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급여의 산정방식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 제도와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퇴직금수령액은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적립된 퇴직금을 금융기관으로 전환하여 근로자 개인이 운용을 하여 운용수익(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금수령액이 결정되는 형태입니다.
- B. 확정급여형(DB)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확정기여형(DC) 가입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C.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로 전환은 가능하나,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Q3.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에서만 가능한가요?

- A.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에 적용을 받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Q4.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다음 5가지의 경우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③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④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Q5.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매년 1, 7월 경)을 한 후에 중도인출 사유가 될 경우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은 매년 4, 10월 경에 공지하는 일정에 맞추어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신청을 하며, KT 전산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금융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는 “붙임 파일” 참조)

- B. 금융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는 크게 공통서류와 증빙서류 일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먼저 공통서류는 확정기여형(DC) 가입신청서와 중도인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는 금융기관별로 양식이 다르며,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서 준비를 하여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증빙서류는 인출사유별로 다르며, 필수로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사유	증빙 서류	발급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민원24)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 매입 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센터, 구청, 온라인(민원24)
	▪ 무주택서약서	가입 금융기관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병원
	▪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구청 온라인(민원24)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법원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 (최근5년 이내)	법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파산선고문(최근5년 이내)	법원

※ 주택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는 사본 제출, 기타서류는 원본 제출

C.증빙서류는 중도인출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발급 또는 작성분만 인정이 됩니다.

D. 주택구입의 경우는 중도인출 신청 접수시점에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즉
등기가 완료된 이후 중도인출을 신청하시면 인출이 불가합니다.

E.장기 요양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반드시 '향후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포
함되어야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F. 신한은행 퇴직연금 담보대출자는 신한은행 확정기여형(DC) 상품으로 전환을 하신 후에
중도인출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부분만 인출도 가능하나요?

- A. 중도인출 또는 DC형 전환 후에 금융기관을 변경을 원할 경우는 매년 1, 7월에 금융기관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변경 전 가입한 상품의 해지에 따른 불이익(약정이자율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8. 중도인출을 한 후에 확정급여형(DB)으로 다시 전환할 수 없나요?

- A.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므로, 중도인출한 경우는 확정급여형(DB)으로 다시 전환 할 수 없습니다.

Q9. 회사 대부금이 있을 경우 또는 급여/퇴직금이 압류된 경우는 중도인출이 안되나요?

- A. 회사 기금 대부금 신청 시에 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을 제시하신 분들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대부금 잔액에 해당하는 만큼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하시거나, 대부금 잔액을 전액 상환하신 경우만 가능합니다.
- B. 급여/퇴직금이 압류된 경우는 회사가 제3채무자에 해당하여 급여/퇴직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Q10. 연대보증인을 제시하여 대부금 잔액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으로 대체 또는 상환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세부사항
보증보험 가입	① 보증보험 가입 메뉴얼 안내 사이트 접속 : http://blog.naver.com/77fineart ② KT직원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처리 : “KT직원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 “매뉴얼 참조 ③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완료 메시지로 바뀌면 완료된 것이며, 다음 진행은 하지 마시고 서울보증보험 김병호 과장(010-3351-1014)로 “성명, 주민번호, 동의완료”내용으로 문자 발송 ④ 문자 발송 익일 오후에 처리결과를 서울보증보험 김병호 과장이 개별 휴대폰으로 문자통보 ⑤ 문자통보를 받으신 분은 가입 메뉴얼 안내 사이트 접속 : http://blog.naver.com/77fineart ⑥ “KT직원 전자서명” 매뉴얼 참조하여 “전자서명 및 보험료 송금”처리 - 보험료는 “전자서명” 진행 중에 나오는 금액 확인하여 보험료 송금계좌로 금액 이체 - 보험료송금계좌 : 신한은행 325-81-60532819 예금주 서울보증보험 ⑦ 전자서명 및 송금완료 후 서울보증보험 김병호 과장(010-3351-1014)에게 “전자서명 및 송금완료” 내용으로 문자 발송 - 익일 오후에 처리결과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문의처	① 보증보험 가입 문의 : 서울보증보험 김병호 과장(☎ 010-3351-1014, 031-702-0042) ② 보증보험 가입 절차 안내 : 분당 업무지원센터 정민경 031-727-4231 / 장미미 031-727-4236

B.일시 상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세부사항
일시상환	① 신청기간 : 수시/일시상환은 매월 1~10일 , 25일~말일 신청/상환가능 ② BIT-ERP >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대부 > 대부현황 및 일시/수시 상환 신청 ③ 입금처리 : 국민은행 366501-01-050721 (예금주 - 케이티복지기금) 직원이름으로 송금 ④ 상환금액 : 원금 + 이자(상환일자에 따라 이자가 변동됨) ⑤ 상환금액 송금 익일 상환여부를 BIT-ERP > > 대부현황에서 확인가능
문의처	분당 업무지원센터 : 정수경 031-727-4231 / 장미미 031-727-4236

Q11. 중도인출 신청자가 원할 경우 회사 대부 잔액을 먼저 공제하고 중도인출을 할 수 없나요?

- A. 네, 대부 잔액을 먼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2항에서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 대부금을 먼저 공제할 수 없습니다.

Q12. 주택구입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무주택 기간이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 A.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만 무주택자이면 가능하며, 무주택 기간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13. 주택구입이나 분양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주택을 신축해도 자격이 되나요?

- A. 네, 주택 신축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서류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① 무주택서약서
 - ②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세목별 과세증명서
 - ⑤ 신축 주택 설계서
 - ⑥ 공사계약서(단, 신축 건물의 용도가 "거주용 주택"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Q14.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부부 사원의 경우도 각각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15.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인출이 불가한가요?

- A.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으면 유주택자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Q16. 장기요양 사유로 인출신청을 할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에 정하고 있는 범위를 같이 적용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생계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동거여부 불문	-
기타 부양 가족	직계비속, 입양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단, 학업, 요양 등의 일시퇴거 또는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도 동거가족으로 봄)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도 동거가족으로 봄)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 B. 부양가족에 장인, 장모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증빙필수)

Q17. 장기요양의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에 꼭 “향후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야 하나요? 내용에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A. 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신청 시점 한 달이내의 작성분이어야 하며, “향후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금융기관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중도인출을 할 경우는 금융감독원이 감사지적 대상이 되어 금융기관에서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B.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있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인 요양이나 치료가 아닌 “추적 관찰” 등으로 표현되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18.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는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개인신용회복 절차 진행중인 경우는 중도인출이 불가한가요?

- A. 불가합니다. 개인신용회복 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Q19. 중도인출 이후에 사유가 된다면 다시 인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인출 이후에 다시 인출 신청하는 시점에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지위가 유지된다면 중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분양 받아 계약금을 납부할 때 중도인출을 하고, 잔금 납부시까지 다시 적립된 퇴직금을 인출을 신청할 경우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의 경우도 요양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다시 인출을 해야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중도인출시와 동일하게 공통서류와 해당 증빙서류 일체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Q20. 이번 중도인출 이후에 향후에도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 A. 올해는 10월 경에 상반기와 동일하게 법정 중도인출 사유자에 한 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DC형으로 전환한 분(1, 7월 시행)들은 법정 중도인출 사유가 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시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21. 중도인출 신청 시점부터 인출가능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뭔가요?

- A. 중도인출 신청 접수부터 인출 가능일까지는 약 1개월 소요되는데, 프로세스별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일 기준)
- ① 금융기관에서 접수 기간 : 10일

- ② 금융기관별 최종 접수 명단 확정 후 KT 통보 및 대상 제외자 확인 : 3일
- ③ 개인별 퇴직급여 산정 및 금융기관별 DC전환 금액 확정 : 10일
- ④ 자금운용팀 금융기관별 DC 전환 금액 준비 : 5일
- ⑤ DC전환일 이후 중도인출 신청시 상품 해지 및 계좌이체 : 3~5일
(금융기관별로 상이함)